

- 2023년 제2회 고양시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(비서) -

2023년도 제2회 고양시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비서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3년 6월 29일

고양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I 채용분야 및 인원

※ 근무기간 1년 계약 이후, 사업의 계속성 및 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계약가능

채용분야 <근무부서>	채용직급	채용인원	채용기간	담당업무
비서 <의정팀>	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마 급 (주 3 5 시 간)	1명	1년	· 의원실 관리 및 비서업무 · 전화 및 의원실 내방객 안내 · 의원실 필요 물품 구입 및 재고관리 · 의원 의정활동 업무 지원

II 법적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(신규임용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)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(연봉 및 연봉한계액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
- 「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 설치 및 정원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Ⅲ 응시자격 기준

□ 공통요건 (결격사유 등)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응시 연령 : 18세 이상(2005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거주지·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)

〈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〉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〉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□ 직무분야 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
채용분야	응 시 자 격 요 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비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(주35시간)	○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관련분야】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에서 비서, 행정업무, 의원보좌 분야 근무 경력 -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)

- ※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
- ※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상에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해야함(근무기간 산정은 시간할 계산되며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
- ※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에 따라 일반(시간선택제)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

VI 보수 및 복무

□ 보수

구분	연봉액(주35시간 기준)
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(9급 상당)	26,057천원

- 연봉 :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,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
- 연봉 외 급여 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 - 가족수당, 가족수당가산금, 자녀학비보조수당, 직급보조비, 초과근무수당, 연가보상비, 정액급식비 등

□ 복무

-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
-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
-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

V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□ 응시원서 접수

- 원서교부: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채용 공고 (붙임 파일)
- 시험공고: 2023년 6월 29일(목)
- 접수기간: **2023년 7월 6일(목) ~ 7월 10일(월)** <3일간>
- 접 수 처: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인사팀(신관 지하1층)
-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(등기) 접수 ※ 퀵서비스, 택배, 팩스, 인터넷 접수불가
 - ① 방문접수(대리 가능, 신분증 지참) ※ **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**
 - 근무시간 내(09:00 ~ 18:00)에 접수 *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접수 불가
 - 제출 전 고양시청 신관 1층(민원여권과)에서 해당직급 증지 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 (고양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)
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- ※ 대리 접수,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 - ② 등기우편 접수
 - 주소 : (우)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), 신관 지하1층
고양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인사팀 인사담당자
 -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, 우편발송 시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할 것(인사팀, 031-8075-3878)
 - 해당 직급 응시수수료(5천원) 비용만큼 통상환증서(우체국에서 판매)을 구입하여 동봉
 - ※ **받을 분 기재 금지,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제출 불가**
 - ※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(16:00) 유의
 - 봉투 겉면에 ‘고양시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비서) 채용시험 응시원서’ 문구 표기
 - 응시표를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

□ 시험일정

시험공고	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 · 장소	합격자발표
2023. 6. 29.(목)	2023. 7. 6.(목) ~ 7. 10.(월) <3일간>	서류전형	-	2023. 7. 17.(월) 전 · 후
인성검사(메일주소로 링크 전송하여 비대면으로 실시) 및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				

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- 의회소식 -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니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시험방법

○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
- 단, **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**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5조 제4항)

※ 채용분야 관련 학력·경력 등 기준으로 3배수 이상 선발,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

○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구술에 의한 문답식으로 검정
- 평가기준 : 아래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, 중, 하로 평정

· (평정요소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|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|
|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|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|
|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| |

· (평가방식)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·응답(분야별 단체면접)

· (불합격 기준)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하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’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됨

○ 합격자 결정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최종합격자 결정 : 고양시의회 홈페이지(합격자 공고란)에 게시

○ 추가합격자 결정

*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0조의3)

VI 제출 서류

※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, 클립·집게 등을 사용하여 연번 순서대로 1개로 묶어서 제출

※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, 클립·집게 등을 사용하여 연번 순서대로 1개로 묶어서 제출
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[별지1호 서식]

② 응시원서 1부 [별지2호 서식] :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

- (방문접수) 고양시청 신관1층 <민원여권과>에서 고양시 수입증지 수수료(5,000원) 납부 후 응시원서에 부착
- (우편접수) 우체국에서 5,000원 상당 통상환증서 구입 후 동봉 발송(정부 수입인지 불가)
 - ※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

③ 이력서 1부 [별지3호 서식]

- 증빙자료(경력증명서)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력 기재 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 불가)

④ 자기소개서 1부 [별지4호 서식]

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[별지5호 서식]

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(졸업증명서)

- 대학교(전문학사)이상은 모두 제출하며,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해당 졸업증명서 제출
 - ※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⑦ **자격요건 검증/인성검사 동의서,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** [별지6호 서식]

⑧ **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** [별지7호 서식] (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)

-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, 연락처 기재되어야 함.
※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
-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.(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위(급) 및 담당업무 기재)
- 비상근(시간제)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
-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‘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’를 첨부하여 제출,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.

※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⑨ **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** (전체내역) : 국민건강보험공단 (<http://www.nhic.or.kr>)

- 제출한 경력(재직)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
-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‘보험가입 전체기간’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
-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 서류 제출

⑩ **서류전형 제출 서류 1부** [별지8호 서식]

⑪ **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** (해당자 및 원본 지참)

- 어학능력성적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

⑫ **주민등록초본 1부** 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비동의자에 한함)

⑬ **기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[수상실적 등](해당자에 한함.)**

- 사본 제출 가능

※ **서류제출 유의사항**

-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기재
-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
-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하여 제출
-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 지참
-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(경력증명서 제외)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

VII 기타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고양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복수지원 불가합니다.
-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·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.
 - ※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되며, 입증자료 중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, 14일 이내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(방문 수령만 가능)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.

- 응시서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(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)

※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.
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(명예퇴직 등) 제3항제2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.
-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고양시의회 홈페이지(www.goyangcouncil.go.kr)에 공고합니다.
- 채용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팀(☎031-8075-3878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